

공학융합연구소 규정

2012. 2. 29. 제정

2018. 6. 20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공학융합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여성 공과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선도적 융합 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공과대학 내 우수한 연구진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,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고 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 연구
2. 본교 내 타 연구소(센터)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연구
3. 공학 융합분야의 학제적 교육 및 훈련과정 운영
4.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
5. 국내외 학·연·산 협력 연구 및 기술 개발
6. 기타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실버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여성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그린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에너지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헬스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실버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는 노인 복지 융합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여성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는 여성과 육아 융합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그린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는 환경 융합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에너지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는 에너지 융합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헬스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는 건강 및 식품 융합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⑦행정실은 실버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여성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그린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에너지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, 헬스테크놀로지 융합연구센터의 서무 회계와 각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(또는 연구실)에 부장(또는 실장)을 둘 수 있다. 부장(또는 실장)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
②각 부장(또는 실장)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8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중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융합 연구소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공과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부 칙 (2012. 2. 29. 제정)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